

'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의안번호

189

제출년월일 : 1993. 7. 2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공유재산 취득 : 1건 1필지 661㎡
- 공유재산 매각 : 1건 1필지 1㎡

3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 재 지	지 목 (구 조)	전 체 면 적	신 청 면 적	재 산 가 격 (공시지가)	비 고
취 득	다대동 120-35	잡	661	661	429,650	토 지
매 각	신평동 135-8	대	3	1	830	토 지

4. 근 거

- 취득 : 지방재정법 제77조,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매각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 1 항 3 호,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 2 항

구유재산취득및매각처분신청서

1. 재산가액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재 산 유 형	재 산 별	소 재 지		지 목	신 청 면 적	재 산 가 격 (공시지가)	비 고
			동 명	지번				
취 득	토 지	사 유 토 지	다대2동	120-35	잡	661	429,650	삼미금속 (주)소유
매 각	〃	구 유 재 산	신평1동	135-8	대	1	830	

2. 재산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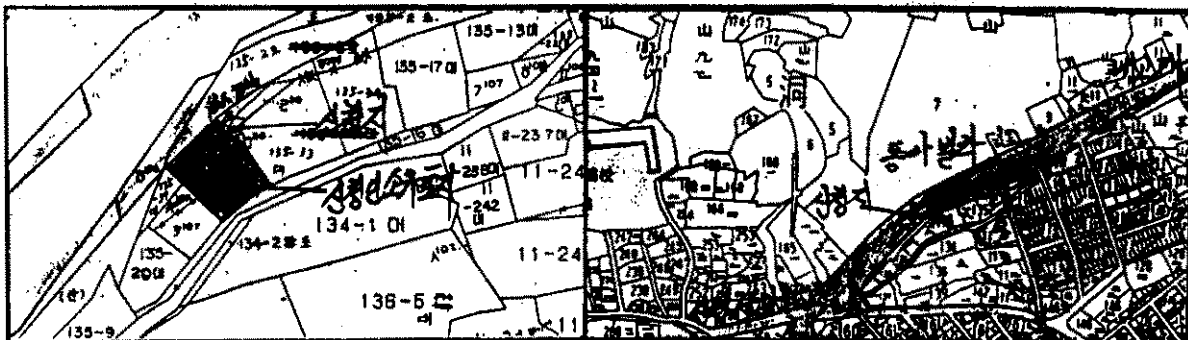
재 산 조 정		소 재 지		면 적 (m ²)		재 산 의 현 황	매수 신청인
일 자	목 적	동 명	지 번	지 적	신청면적		
'91. 8.24	승 계	신평동	135-8	3	1	신청인 소유토지인 135-18번지와 접하여 있으며 주택용지로 사용	신평동 135-18 전 호 진
'93. 3. 4	취 득	다대동	120-35	661	661	삼미조선(주)의 삼환 APT 신축예정 부지와 접한 도로변의 나대지임	사하구청장

공 유 재 산 실 태 조 사 표

1. 재산가격표시

소 재 지	지 목	면 적 (㎡)	용도지역	점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신평동135-8	대	1	일반주거	신평동 135-18 (6/3)	전 호 진	

2. 위치 도



3. 재산의 연혁 및 현황

- 위 재산은 부산직할시 소유의 토지로 '90. 11. 21 도로에서 용도폐지되어 대지로 지목 변경된 후 '91. 8. 24 승계받은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임.
- 위 재산은 신청인 소유토지인 신평동 135-18번지와 접하여 현재 주택용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하여 있음.

4. 처리의견

- 위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고 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접해 있으므로 공유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감정평가 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함.

5. 매각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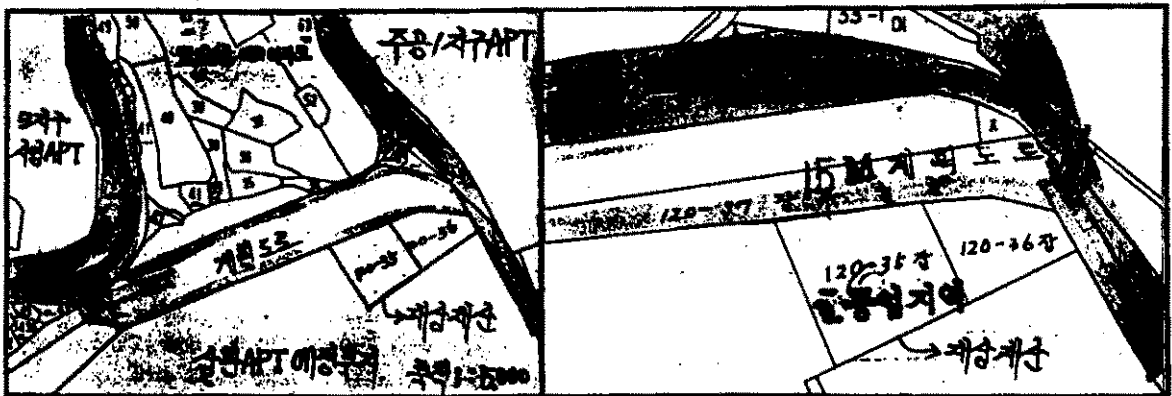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②항

취득재산실태조사표

1. 대상재산 및 재산가액

소 재 지 목	면 적 (㎡)	용 도 지 역	재산평가액(천원)		소 유 자		비 고
			단 가	총 액	주 소	성 명	
다대2동 120-35	잡 661	준공업 지역	650	429,650	경남 창원시 성산동 55	삼미금속 (주)	대 표 조 병 준

2. 위치도



3. 재산의 연혁 및 현황

- 위 재산은 당초 해면이었으나 매립준공된 토지로서 다대동 120-10번에서 '92. 12. 2 토지 분할된 재산임.
- 위 재산은 다대 2동 소재 삼미조선(주)의 매립준공된 삼환아파트 신축예정부지와 접하여 있는 현황 나대지임.

4. 취득방법

- 위 재산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이므로 위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함.

5. 감정평가액의 매입근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
-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